



미국,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 도입 추진

이아름 연구원

■ 최근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(NAIC: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)는 재무건전성 개혁 작업(SMI: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)의¹⁾ 일환으로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(PBR: Principle-Based Reserving) 도입을 추진 중임.

- NAIC는 SMI를 2009년 「표준책임준비금 모델법(Standard Valuation Law, 이하 SVL)」 개정을 토대로 생명보험 상품에 한해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(Rule-Based Reserving)에서 PBR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(SMI는 2008년 6월부터 추진).
- 이와 더불어 NAIC는 SVL에 규정된 가치평가지침(Valuation Manual)²⁾을 2012년 12월 최종 확정하고 2013년 7월 PBR 도입 계획을 마련하였음.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따라 지급여력 평가 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며, 이에 상응하여 미국도 PBR 도입을 추진함.

- 국제보험감독원칙(ICP: Insurance Core Principles)은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근거한 지급여력 평가원칙을 제시함.³⁾
- 이에 유럽도 Solvency II 원칙으로 자산·부채의 시가평가, 요구자본의 이원화, 측정대상 리스크의 세분화를 강조하고 있음.⁴⁾
-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ICP와 Solvency II 사례를 토대로 지급여력 감독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.⁵⁾

1) SMI는 미국 지급여력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임. SMI의 주요 의제는 자기자본규제, 지배구조와 위험관리, 그룹 감독, 감독회계 및 재무회계, 재보험 등으로 구성되는데, PBR은 감독회계 및 재무회계 의제에 해당됨.
2) 가치평가지침은 생명보험, 연금보험, 적립식 보험(deposit-type contracts), 건강보험, 신용생명 및 장애보험, 특약 및 부가급부(riders and supplemental benefits), 기발생보험금 지급준비금(claim reserves) 등 보험상품별 최저준비금 요건을 제시함.
3) 김해식 외(2015), 『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- IFRS와 RBC 연계방안』, 정책보고서, 보험연구원, p. 16.
4) 정인영(2016), 「Solvency II 도입 이후 유럽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」, 『KIRI Weekly』, 제367호, 보험연구원.

- 미국도 ICP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SMI를 추진하여 시가기준 평가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⁶⁾
- 현재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는 상품 복잡성의 증대로 준비금 규모, 위험 측정, 자사 경험데이터 반영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.
 - 첫째,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는 적정 수준(right size)의 준비금을 평가하기 어려움(어떤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준비금 부족, 어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준비금 초과 현상 발생).
 - 둘째,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는 보수적 가정과 공식(formula)에 의해 준비금이 산출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함.
 - 셋째,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는 부채의 시장가치,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변화, 그리고 보험회사의 실제 경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.
- 이에 반해 PBR은 다양한 가정(assumptions)에 입각한 공식과 세분화된 위험요인⁷⁾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음.
 - PBR은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에 비하여 보험상품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측정할 수 있음.
 - PBR은 위험요인을 세분화하고 회사별 특징을 보다 잘 반영하는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음.
- 현재 캘리포니아 주(州)를 비롯한 많은 주 보험감독청은 생명보험 신계약에 한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PBR제도를 도입할 예정임.
 - 현재 미국 총보험료의 71%를 차지하는 39개 주들이 PBR제도를 채택한 상태임.
 - NAIC는 PBR 도입조건으로 최소 42개 주(미국 총보험료의 75% 비중)가 개정된 「표준책임준비금 모델법」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 [kiri](#)

5) 김해식 외(2015), p. 16.

6) 2011년 국제보험감독자기구(IAIS: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)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원칙을 담은 국제보험원칙을 개정·공표한 바 있음.

7) 가입자의 행동, 사망위험률, 금리리스크, 채무 불이행, 사업비, 계약상 보장 지수 관련 리스크 등 보험회사의 경험 요인들이 포함됨.